

#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7.

발의자 : 문진석 · 이연희 · 한정애  
이건태 · 김교홍 · 강준현  
이정문 · 박용갑 · 박정현  
조인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  
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.

그런데 대폐차(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  
는 것)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·도로 양도  
· 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,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  
의 번호판·서류를 위·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 
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·대폐차 등 행정정보  
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 불법증차된 것인지 모르고 번호판을 양수한 자가 감차처분을  
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두어야  
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 허

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,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·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(제19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7조의4 신설 등).

##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할 때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를 각각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7까지로 하고,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47조의5(종전의 제47조의 4)의 제목 중 “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”를 “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”을 “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(이하 “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등”이라 한다)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등”으로 한다.

제47조의4(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의 통합적 관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, 대폐차에 관한 사항,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활용하는 사항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(이하 “통합관리시스

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의 장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67조제6호의2 중 “제47조의4”를 “제47조의5”로, “화물운송실적관리 시스템의”를 “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의3 중 “제47조의5를”을 “제47조의6을”로 한다.

제70조제2항제21호의2 중 “제47조의6”을 “제47조의7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

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<신 설>

제47조의4(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의 통합적 관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, 대폐차에 관한 사항,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활용하는 사항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(이하 “통합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의 장,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



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 료제출 등을 한 자	-----
22. ~ 27. (생 략)	-----
③ (생 략)	22. ~ 27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